

수원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17662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권택곤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균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윤진, 배수진

변론 종결2021. 4. 1.

판결 선고2021. 4. 1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240,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2021. 4.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판유리, 창호 제작, 공급, 설치공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D 지상에 신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8. 2. 25.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 2018. 2. 25. ~ 2018. 10. 30.

○ 계약금액 : 412,280,000원

○ 지급조건 중도금: 창틀 입고시 20%

잔금: 준공후 한달이내 80% (단, 공사완료 후 2개월 이내)

제4조(하자보증기간)

원고는 시설에 대한 공사완료일부터 1년간 하자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 원고, 피고들, E은 2018. 2. 10.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창호유리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 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도급계약사항 공사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기간 2017년 ~ 2018년

○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창호유리공사)

최초계약금액 ₩412,280,000

계약기간 2018. 2. 10. ~2018.10. 30.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원수급인(E)과 하수급인(원고)의 계약 대금지급조건인 '창틀 프레임 설치 완료시 동별 계약금의 20%는 현금지급하며, 잔금 80%는 동별로 준공 후 1달 이내(단 창호공사 완료 후 2달 이내)지급한다' 기준에 준하여 원수급인(E)이 지불 불이행시 발주자(피고들)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원고)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라. 원고는 2018. 10. 30.경 위 창호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2019. 1. 2.경 완성되었다. 한편, 원고에게, E은 2018. 3.경 82,456,000원을, 2019. 3. 7. 5,000만 원을, 피고들은 2020. 4. 7.경 ~ 2020. 5. 4.경 유리공사대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 144,8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공사대금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나. 피고

원고가 시행한 창호공사 중 미시공 및 하자 부분이 존재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보수 비용 합계 31,583,497원이 공제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공제 주장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행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민법상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거래의 관행·당사자들의 의사·당사자들의 관계·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복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

다수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함께 채무자가 되는 구체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살펴서 그 다수의 채무자가 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혹은 불가분적인 채무로서 채무전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및 갑 제2, 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 점, ②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각 호를 분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로서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고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144,8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가) 오시공 하자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창호에는 부실시공의 하자가 발생되었고, 그 구체적인 하자는 1) 미시공 하자(방충망 미시공, 현관 및 지하창호 코킹 미시공), 2) 오시공 하자(창호 미세조정 등 마무리 공정 미흡, 화장실 창호 개폐불량, 안방, 복층 방화도어 잠금장치 불량, 베란다 창호 터닝도어 불량)가 있다고 감정되었으며, 감정인은 2020. 2. 20. 및 2020. 3. 19. 창호 시공현황을 감정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창호에 발생한 오시공 하자는 시공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미시공 하자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되었다면 그 공사는 완성된 것이고,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214707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2019. 1.경 준공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창호공사를 완성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유리대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들도 위 공사의 완성에 대해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하도급받은 위 공사는 완성되었고 미시공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방충망을 제작하였음에도 그 설치를 거절한 것에 불과하므로 미시공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미시공 부분 및 오시공 부분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31,583,497원(= 미시공 부분 23,597,008원 + 오시공 부분 7,986,48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1,583,497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2)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인의 원도급대금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원도급대금채무의 존부에 관한 항변사유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원도급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생긴 후에 그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발주자는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지급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본소), 7267(반소)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공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20. 5. 18.자 준비서면이 2020. 5. 1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상계의 의사표시 당시 위 공사대금 채권과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각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44,824,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31,583,497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게 되었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113,240,503원이 남게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3,240,503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0. 5.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방충망을 제작하였음에도 그 설치를 거절한 것으로 미시공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재료비 상당액은 공제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방충망의 설치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 및 하자보증기간의 도과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건축물의 노후화에 기인한 것이고, 창호공사의 경우 그 하자보증기간이 1년인데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사용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위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하자보증기간을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하자보증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하자보수책임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는 여전히 존속한다. 그런데 앞서 본 하자가 위 하자보증기간의 도과 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10. 18.경 이 사건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신축주택에 미시공 및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현장사진 및 견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하자 모두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승호

판사김보현

판사전지은